

外國의 大學財政 現況

金 永 哲 (韓國教育開發院)
孔 銀 培 (韓國教育開發院)

1. 緒 論

일반적으로 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質을 결정해 준다는 데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며 교육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교육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비의 충족 여부가 그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교육비의 확보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국가일수록 교육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대학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대학재정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내지는 대학이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經費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경비가 조달되는 원천을 財源이라고 하며, 경비의 관리·사용은 재정의 배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재정의 본질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교육 경비가 어떻게 확보되고 있으며, 확보된 경비가 어떠한 교육활동의 전개를 위해서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재정은 단순한 경비의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사항도 분석되어야만 보다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의 대학 교육제정 분석을 파악하기만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더욱

기 대학제정은 각국이 안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초·중·등교육 제정과도 연계된 이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背景的 特性들과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학제정의 분석도 지극히 개괄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또 외국의 대학제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행정 제도 및 운영과도 유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심층적인 분석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외국의 대학교육 재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배분·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주로 경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대학재정의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세계 주요 국가의 총 교육비에 대한 概況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대학교육비의 비중을 고찰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제정의 財源 및 配분에 관한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서 우리나라 대학제정에 줄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을 분석·추출한다.

2. 世界 主要國家의 教育費 概況

本 章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總教育投資規模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것이 GNP 및 정부 예

〈表 1〉 世界 主要國家의 教育費 및 高等教育費 比較

(단위 : %)

| 국명 | 연도 | 1인당 GNP (U.S.S) | GNP 對比 總教育費 | 政府豫算對比 總教育費 | 總教育費 經常費 | 經常費 高等教育費 | 學生 1人當經 常高等教育費 (U.S.S) |
|-------|------|--------------------|----------------|----------------|-------------|--------------|------------------------------|
| 미국 | 1981 | 14,100 | 6.8 | — | 93.2 | 36.6 | 5,911 |
| 캐나다 | 1981 | 12,310 | 7.8 | 17.0 | 92.5 | 27.0 | 6,012 |
| 일본 | 1981 | 10,210 | 6.0 | 19.4 | — | 11.0 | 4,711 |
| 프랑스 | 1980 | 10,500 | 5.1 | — | 92.8 | 13.4 | 3,880 |
| 영국 | 1980 | 9,200 | 5.7 | 13.9 | 94.1 | 22.4 | 7,619 |
| 서독 | 1981 | 11,430 | 4.7 | 10.1 | 86.4 | 15.1 | 4,120 |
| 스웨덴 | 1982 | 12,470 | 9.0 | 13.0 | 85.2 | 8.9 | 3,095 |
| 이탈리아 | 1979 | 6,400 | 5.0 | 11.1 | 86.5 | 9.1 | 1,177 |
| 싱가포르 | 1982 | 6,620 | 4.5 | 9.6 | 72.4 | 26.4 | 3,921 |
| 그리스 | 1979 | 3,920 | 2.2 | 10.1 | 94.3 | 21.0 | 1,446 |
| 베네주엘라 | 1981 | 3,840 | 5.8 | 15.0 | 95.6 | 35.5 | 4,062 |
| 한국 | 1982 | 2,010 | 4.3 | 21.5 | 78.5 | 27.2 | 1,157 |
| 브라질 | 1981 | 1,880 | 3.8 | — | 95.6 | 35.5 | 1,325 |
| 페루 | 1982 | 1,040 | 3.4 | 15.8 | 98.7 | 3.1 | 125 |
| 태국 | 1982 | 820 | 3.9 | 20.3 | 75.9 | 12.2 | 123 |
| 인도 | 1981 | 260 | 3.0 | 9.6 | 98.7 | 13.5 | 120 |
| 나이지리아 | 1979 | 770 | 3.9 | 16.2 | 65.8 | 35.3 | 2,631 |
| 이집트 | 1981 | 700 | 4.5 | 9.4 | 78.6 | 32.0 | 540 |

주: 1) 1인당 GNP 는 모두 1983년도 기준 자료임

2) 통계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3장에서 분석·제시하고 있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5, pp. 174~5.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84.

산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총 교육투자 규모 중에서 高等教育費에 어느 정도 배분되고 있는지의 비중도 추출한다. 〈表 1〉에서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가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으로 구분·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 표에 제시된 국가는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 다른 국가가 포함된다면 비교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를 논외로 하고 제시하였다.

우선 총 교육비의 규모를 GNP 와 비교해 보면 先進國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 9%, 캐나다 7.8%, 미국 6.8% 등이며, 싱가포르 4.5%, 베네주엘라 5.8% 그리고 한국이 4.3%로 나타났다. 한편 후진국의 경우는 3~4%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하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수록 교육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정부

예산 대비 교육비의 비율로 살펴보면 다소 달리 나타나고 있다. 환언하면 그 비율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는 정부 예산이 中央政府의 예산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비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는 국가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예산 대비 교육비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대부분의 교육비가 중앙정부인 國庫로부터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정부 예산 대비 교육비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中央集權의 인 행·제정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는 地方分權의 이더 교육자치제가 결실하게 실시되고 있음도 시사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정부 예산에 교육비를 대비시켜서 나타난 指標로는 교육비의 확보 수준을 파악하기

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총 교육비 중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90% 이상을 經常費에 배분하고 있다. 즉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로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으며, 資本的 經費의 지출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자본적 경비의 지출이 높은 국가가 싱가포르, 한국, 미국, 나이지리아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상 교육비 중에서 고등교육비에의 배분은 미국이 36.6%로 가장 높다. 즉 학교 단계별로 볼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가장 많은 교육비의 배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외의 선진국은 고등교육에 높은 投資配分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11%, 프랑스 13.4%, 스웨덴 8.9% 등으로 미루어 이러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포함된 국가 중 한국은 27.2%이며, 그 이외의 국가도 모두 총 교육비의 20% 이상을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비율이다. 후진국 중에서도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등은 고등교육에 30% 이상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배분된 결과에 더해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선진국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선정된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7,619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태국, 페루, 인도와 같은 후진국은 120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후진국의 학생일수록 역시 질 낮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우기 질 높은 교육이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진국의 교육과 국가발전의 관계는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한다고 볼 수 있다.

3. 主要國家의 大學 教育財政 現況

1) 美 國

미국의 대학재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 재원, 교육비의 지출 항목별 분류 그리고 학

생 1인당 교육비 수준 등을 분석·제시한다.

주요 教育財源은 수업료, 연방정부 보조금, 주 정부 및 지방정부 보조금, 기부금, 사설 연구지원비 및 증여금, 서어비스 및 생산물 판매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수업료는 유일하게 학생이 부담하는 재원으로 사립대학일수록 큰 재원이 되고 있다. 수업료는 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립대학이 공립대학보다 매년 수업료의 인상률도 더 높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관점에서는 공립대학의 수업료 수준을 논쟁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공립대학이 낮은 수준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러한 공립대학의 수업료 정책으로 인하여 1950년대에는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생수가 거의 비슷하였으나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공립대학 학생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공립대학은 필요한 학생에게 수업료 보조(tuition assistance)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사립대학의 경우는 모든 주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여하튼 수업료는 주요 대학 교육 재원의 하나이나, <表 2>에서와 같이 공·사립간에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공·사립대학과 대학원의 학생 1인당 수업료를 각각 평균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사립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表 2> 美國 高等教育機關 授業料 比較(1980)

(단위: \$)

| 구 분 | 대 학 | | 대 학 원 | | B/A | D/C |
|--------|-------|-------|-------|-------|------|------|
| | 공립(A) | 사립(B) | 공립(C) | 사립(D) | | |
| 전 체 | 2,152 | 4,775 | 2,553 | 5,671 | 2.22 | 2.22 |
| 종합대학교 | 2,474 | 5,795 | 2,676 | 6,452 | 2.34 | 2.41 |
| 대 학 | 2,207 | 4,643 | 2,397 | 4,670 | 2.10 | 1.95 |
| 2년제 대학 | 1,844 | 3,771 | — | — | 2.05 | — |

주: 수업료는 기숙사비 등도 모두 포함된 평균 규모이며, 공립의 경우는 거주자(resident) 기준임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2), p. 142.

원은 대학의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用途가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부금 재원이 1930~40년대에는 사립대학의 경우에 총 교육비의 25% 수준에 달했으나, 1950년대는 15%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5%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립대학의 기부금 재원도 소수의 유명한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1980년도 통계에 의하면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기부금 재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00개 대학을 선정·발표하고 있는데 1위가 Harvard 대학으로 1980년 시장 가격으로 15.8億弗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재원으로부터의 순수입이 당해 년도 교육비로 계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exas 대학(Austin) 12.2億弗, Yale 대학 6.8億弗, Stanford 대학 6.3億弗, Princeton 대학 5.5億弗, MIT 4.3億弗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의 재원으로 개인적인 贈與 및 支援金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주립보다는 사립대학에서 보다 주요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원 중 단순한 증여는 대학에서 임의로 지출할 수 있으나, 경상비 또는 자본비 등에 한정해서 주어진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예로 贈與者가 증여한 교육비가 새로운 건물의 건축비 또는 학생 보조금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요구한다면 대학은 그 경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별도의 用途指定이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會計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재원도 계속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끝으로 서어비스 및 생산물 판매 수입도 대학의 주요 세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學科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농과대학은 그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어떤 학과는 정부의 기구와 연구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교육학과는 지방 학교구를 위한 각종 테스트에 관한 서어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와 같이 서어비스 및 생

〈表 4〉 美國 高等教育機關의 教育財源 構成(1980)
(단위: %)

| 재 원 | 전체 | 공립 | 사립 |
|------------------|-------|-------|-------|
| 총 교육비(億 \$) | 585.2 | 388.2 | 197.0 |
| 학생 부담(수업료) | 20.4 | 12.5 | 35.9 |
| 정부 부담 | 49.3 | 63.1 | 22.3 |
| 연방정부 | 15.2 | 13.1 | 19.4 |
| 주정부 | 31.4 | 46.3 | 2.1 |
| 지방정부 | 2.7 | 3.7 | 0.8 |
| 개인적인 증여 및 지원금 | 4.8 | 2.5 | 9.3 |
| 기부금 | 2.0 | 0.5 | 5.0 |
| 서어비스 및 생산물 판매 수입 | 20.7 | 19.2 | 23.6 |
| 기타 | 2.8 | 2.2 | 3.9 |

주: 1) 경상비 기준임
2) 2년제 및 4년제 대학이 모두 포함되었음
자료: NCES, *Digest of Education*, p. 137.

산물 판매 수입은 학과별로 일반 예산으로부터 예산의 자율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예산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대학 교육비의 재원에 관한 개요를 고찰하였다. 〈表 4〉에 구체적으로 교육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가 제시되고 있다. 전체 고등교육 기관을 볼 때, 정부 부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생 부담인 수업료, 서어비스와 생산물의 판매 수입, 그리고 개인적인 증여 및 지원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학교 선택별로 보면 공립은 정부 부담, 사립은 학생 부담의 비율이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부 부담에 있어서 공립대학은 州政府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증여 및 지원금과 기부금은 공립대학에서는 큰 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총 교육비의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큰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미국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재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에 이러한 교육비가 機能別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表 5〉에서 교육비의 기능별 분류 현황이 제시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과 일반적인 경비 및 移轉費가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립과 사립은 그 비중이 각각 81.1%와 72.7%로

〈表 5〉 美國 高等教育機關 教育費의 機能別 分類 (1980) (단위: %)

| 지출항목 | 전체 | 공립 | 사립 |
|-----------------|------|------|------|
| 교육과 일반 경비 및 이전비 | 78.3 | 81.1 | 72.7 |
| 수업 | 32.5 | 35.3 | 27.0 |
| 연구 | 9.0 | 9.0 | 8.8 |
| 공공봉사 | 3.2 | 4.0 | 1.6 |
| 학술지원 | 6.8 | 7.4 | 5.7 |
| 학생봉사 | 4.5 | 4.6 | 4.2 |
| 기관지원 | 8.9 | 8.3 | 10.0 |
| 시설유지·관리 | 8.3 | 8.7 | 7.5 |
| 장학금 | 3.9 | 1.3 | 1.4 |
| 기타이전비 | 1.3 | 1.3 | 1.4 |
| 보조사업비 | 11.4 | 10.9 | 12.3 |
| 부속병원 | 8.4 | 7.8 | 9.5 |
| 독립적인 운영비 | 2.0 | 0.2 | 5.6 |

주: 1) 전체 경상비를 100.0으로 한 구성비임
 2) 독립적인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재원의 연구·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경비임
 자료: NCE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p. 145.

분석되었다. 다음이 보조 사업비로 공립 10.9%, 사립 12.3%로 평균 11.4%로 나타났다. 이 보조 사업비는 학생이 별도로 부담하는 재원과 판매 수입에 의해 대학이 운영하는 서서비스 사업으로 학생회관, 교내 서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다음으로 부속병원 운영에 필요한 이전 경비로 전체 고등교육 기관 교육비의 8.4%가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이전비로 배분되고 있다.

교육과 일반 경비 및 이전비 중에서 가장 많은 구성비를 결하고 있는 것이 수업과 연구에 관련된 경비이다. 이 경비는 전체 경상비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업 및 연구 경비는 교수 봉급, 사무실과 실험실 기자재 구입, 교육 설비 수선비, 학과 행정에 관한 경비, 교수에 대한 사무·기술적인 지원비 등과 같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가장 中核에 해당하는 경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機關支援費로 8.9%로 나타났다. 이 경비는 대학내의 각종 위원회,

총장실, 경영 관리, 회계 및 재무, 인사 행정, 설비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가 공립보다는 사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설의 유지와 관리, 주요 설비, 보험, 연료 및 공익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8.3%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술지원비가 6.8%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촉진 내지는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학장실, 도서관, 박물관, 컴퓨터센터, 시청각 자료실, 각종 테스트센터, 교육과정 개발프로그램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다음에 또 하나의 지출 항목으로 학생 봉사에 관한 경비들 들 수 있는데, 이는 등록, 행정, 재정 지원, 학생 보건, 카운셀링, 직업 안내, 기타 학생 활동 등과 같이 학생의 복지에 관한 대학의 기능에 소요되는 경비들 말한다. 그리고 학생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교육비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듯이 한 가지 특징은 교육 활동과 교육비론 유기적으로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 활동을 교육의 기능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고 교육비도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비론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과 같이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총 교육비에 학생수(FTE)를 적용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면 〈表 6〉과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학 유형에 따라서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즉 4년제 종합대학교가 가장 높으며, 단과대학의 1.5배에 해당된다. 2년

〈表 6〉 美國 高等教育機關의 學生 1人當 教育費 (1980) (단위: \$)

| 구분 | 전체 | 공립 (A) | 사립 (B) | B/A |
|--------|--------|--------|--------|------|
| 전체 | 6,706 | 5,908 | 9,140 | 1.55 |
| 종합대학교 | 10,466 | 8,935 | 15,018 | 1.68 |
| 대학 | 6,790 | 6,599 | 7,108 | 1.08 |
| 2년제 대학 | 2,935 | 2,910 | 3,363 | 1.16 |

주: 경상비만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NCES, *Digest of Education*, p. 148.

계 대학은 종합대학교라 대학의 33%와 4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설비별로 보면 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 전체를 보면 사립대학이 1.55배가 더 높게 산출되었으며, 종합대학교의 경우는 1.63배, 2년제 대학의 경우는 1.16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다는 점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는 학생 1인당 교육비율 기준으로 판단하면 사립대학이 공립대학보다 교육 여건이 훨씬 좋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는 經

常費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施設費를 비교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表 7>에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외곽시설과 설비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공립과 사립대학을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대학의 시설비율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모두 사립대학의 施設換算價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균으로 사립대학이 1.4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슷한 방법으로 寄附金 재원도 市場價格으로 환산하여 학생 1인당으로 산출하면 공립과 사립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학생 1인당 기부금은 공립에 비해 사립대학이 1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부금도 공·사립대학의 교육비 격차를 유발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表 7> 英國 高等教育機關의 施設 및 寄附金の 現金價(1980) (단위: S)

| 구분 | 전체 | 공립(A) | 사립(B) | B/A |
|--------------|--------|--------|--------|-------|
| 학생 1인당 施設換算價 | 9,866 | 8,911 | 12,775 | 1.43 |
| 4년제 대학 | 11,889 | 11,215 | 13,286 | 1.18 |
| 2년제 대학 | 4,941 | 4,906 | 5,520 | 1.13 |
| 학생 1인당 寄附金 | 2,444 | 580 | 8,131 | 14.02 |
| 4년제 대학 | 3,415 | 894 | 8,642 | 9.67 |
| 2년제 대학 | 81 | 34 | 881 | 25.91 |

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施設·設備와 寄附金제원을 모두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NCES, Digest of Education, p. 149.

2) 日本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은 大學, 短期大學(2년제) 및 高等專門學校가 있다. 이 중에서 고등전문학교는 제외하고 주로 대학과 단기대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의 현황을 고찰한다.

우선 대학교육비의 재원은 <表 8>에서와 같이 국·공립과 사립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육비의 재원을 크게 在學者 부담, 利用者 부담, 그리고 公費 부담으로 구분할 때, 국·공립대학은 公費 부담이 主財源이 되고 있

<表 8> 日本 大學教育費의 財源 構成(1980)

(단위: %)

| 대학유형 | 제학자부담 | 이용자부담 | 公費負擔 | 借入金 | 기타 | |
|--------|-------|------------|-----------|------------|------------|----------|
| 대학 | 국립 | 8.7(5.6) | 2.4(21.1) | 88.9(73.3) | — | — |
| | 공립 | 9.0(4.6) | 0.4(38.0) | 90.6(57.4) | — | — |
| | 사립 | 60.6(45.9) | 2.8(23.5) | 18.9(15.1) | 11.5(10.4) | 6.2(5.1) |
| 단기대 | 국립 | 13.7 | 0.1 | 86.2 | — | — |
| | 공립 | 10.8 | 0.8 | 88.4 | — | — |
| | 사립 | 64.8 | 4.2 | 14.0 | 11.8 | 5.2 |
| 고등전문학교 | 국립 | 5.1 | 0.1 | 94.8 | — | — |
| | 공립 | 5.9 | 0.1 | 94.0 | — | — |
| | 사립 | 54.0 | 10.8 | 31.9 | 2.1 | 1.2 |

주: 1) 利用者負擔은 국·공립은 부속병원 수입, 농장·연습원 수입, 용도지정 기부금 등이며, 사립의 경우는 법인단체 기부금, 장수입, 사업수입 등을 말함

2) () 속의 숫자는 부속병원, 부속연구소 등의 수입을 교육비에 포함하여 산출된 결과임

3) 국·공립대학은 제학자 및 이용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公費로 간주하였음

자료: 市川昭平, 教育サービスと行財政(東京:ぎょうせい, 1984), pp. 206~211.

으며, 사립대학은 학생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학자 부담이란 납입금 및 수수료, 개인 기부금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국·공립대학 교육비 중에서 9%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는 6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자체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利用者 부담은 제학자 부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속병원 및 부속연구소 등의 수입을 교육비에 계상한다면 이용자 부담의 비중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공립대학에서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국립대학은 國庫에서 그리고 공립대학은 地方政府인 都道府縣 및 市町村에서 그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공비 부담이 사립대학에서는 총 교육비의 19% 수준에 달하고 있다. 사립대학에서의 이러한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 외에 사립대학에서는 借入金 재원이 11.5%로 나타나고 있으며, 資産運營과 賣却으로부터 오는 수입도 6% 수준에 달하고 있다.

단기대학의 경우도 대학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학자 부담이 오히려 대학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재원 중에서 제학자가 부담하는 納入金 수준을 대학 설립비로 보면 사립대학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表 9>에서 대학 설립비 학생 1인당 평균 납입금 수준이 비교·제시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학생 납입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만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립대학은 교육시설 확충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납입금 수준은 국립대학의

<表 9> 日本 大學設立別 學生納入金 比較(1983)
(단위: 円)

| 項 目 | 국립(A) | 사립(B) | B/A |
|--------|---------|---------|------|
| 納 入 金 | 336,000 | 860,340 | 2.56 |
| 授 業 料 | 216,000 | 438,478 | 2.03 |
| 入 學 金 | 120,000 | 224,834 | 1.87 |
| 施設擴充費等 | — | 197,028 | — |
| 檢 定 料 | 19,000 | 21,076 | 1.11 |
| 合 計 | 355,000 | 881,416 | 2.48 |

자료: 市川昭午, 『教育サービスと行財政』, p. 166.

<表 10> 日本 私立大學 教育費 財源 構成(1981)
(단위: %)

| 계 源 | 計 | 短期大 | 大 學 |
|------------------|------|------|------|
| 일반 수 입 | 69.5 | 83.4 | 67.0 |
| 납입금·수수료 | 41.8 | 59.2 | 42.2 |
| 기 부 금 | 2.8 | 1.7 | 3.0 |
| 보 조 금 | 14.1 | 13.4 | 14.3 |
| 國 庫 | 13.6 | 12.9 | 13.8 |
| 都 道 府 縣 | 0.4 | 0.2 | 0.5 |
| 市 町 村 | 0.1 | 0.3 | — |
| 자산운영·대각 잡 수 입 | 7.8 | 9.1 | 7.5 |
| 사 업 수 입 | 18.4 | 2.6 | 21.3 |
| 차 입 금 | 12.1 | 14.0 | 11.7 |

자료: 日本文部省, 『文部統計要覽』, 1983.

2.56배에 해당되고 있다. 여기에 檢定料까지 포함한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은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의 약 2.5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다음에 사립대학의 교육비 재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 10>과 같다. 사립 고등교육기관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수입이 69.5%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이 사업 수입 18.4%, 차입금 12.1%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 구성은 단기대학에서는 일반 수입의 비중이 그리고 대학에서는 사업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 수입은 납입금,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납입금 및 수수료 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비중은 전체 교육비 중에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國庫 13.6%, 地方政府가 0.5%로 모두 14%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尙附金 수입은 그 비중이 2.8%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 대학을 평균적으로 볼 때 기부금은 사립대학 교육비의 큰 재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대학 소유의 자산 운영 수입, 자산 매각 수입 및 기타 잡수입의 비중이 7.8% 수준에 달하고 있다.

다음에 대학교육비의 저출 항목별 구성 현황이 <表 11>에 대학 유형별, 설립비로 분석·제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비에 해당하는 消費的 支出이 총 교육비의 74%를 차지하

〈表 11〉 日本 大學教育費의 支出項目別 構成(1981)

(단위 : %)

| 구 분 | 전 체 | | | 단 기 대 | | | 대 학 | | |
|-----------|--------|--------|--------|-------|------|-------|--------|--------|--------|
| | 계 | 국·공립 | 사 립 | 계 | 국·공립 | 사 립 | 계 | 국·공립 | 사 립 |
| 총 교육비(他圓) | 30,565 | 13,407 | 17,158 | 2,801 | 363 | 2,438 | 27,764 | 13,044 | 14,720 |
| 소비적 지출 | 74.4 | 77.0 | 72.4 | 68.2 | 79.9 | 66.4 | 75.1 | 76.9 | 73.4 |
| 인건비 | 47.4 | 46.3 | 48.3 | 50.7 | 58.8 | 49.5 | 47.1 | 46.0 | 48.1 |
| 교육연구비 | 15.0 | 8.5 | 20.1 | 10.5 | 5.9 | 11.1 | 15.5 | 8.6 | 21.6 |
| 관리비 | 5.7 | 7.8 | 4.0 | 5.9 | 6.8 | 5.8 | 5.7 | 7.8 | 3.9 |
| 기타* | 6.3 | 14.4 | — | 1.1 | 8.4 | — | 6.8 | 14.5 | — |
| 자본적 지출 | 22.1 | 23.0 | 21.3 | 24.3 | 20.1 | 24.9 | 21.8 | 23.1 | 20.7 |
| 토지·건축비 | 15.0 | 13.5 | 16.2 | 19.9 | 13.5 | 20.9 | 14.5 | 13.5 | 15.4 |
| 설비·미품·도서비 | 7.1 | 9.5 | 5.1 | 4.4 | 6.6 | 4.0 | 7.3 | 9.6 | 5.3 |
| 채무상환비 | 3.5 | — | 6.3 | 7.5 | — | 8.7 | 3.1 | — | 5.9 |

* 보조관동 사립비, 소정지분금 등이 포함되었음
 자료 : 日本文部省, 文部統計要覽, 1983.

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의 지출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資本的 支出이 22%로 산출되었으며, 나머지가 채무 상환비로 나타났다. 소비적 지출 74% 중에는 인건비가 47.4%, 교육 연구비 15%, 관리비 5.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교육 연구비의 비중이 사립이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경향은 단기대와 대학의 경우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적 지출 경비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15%, 설비·미품 및 도서 구입비가 7%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립대학인수목 토지·건축비의 비중이 국·공립에 비해 다소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대학교육비의 분석에 기초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면 〈表 12〉와 같다. 전반적으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단기대학의 2배에 해당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사

〈表 12〉 日本 大學設立別 學生 1人當 教育費 隔差 (1981) (단위 : 千円)

| 구 분 | 계 | 국·공립(A) | 사 립(B) | B/A (%) |
|-------|-------|---------|--------|---------|
| 전 체 | 1,393 | 2,670 | 1,014 | 38.0 |
| 단 기 대 | 752 | 1,044 | 722 | 69.2 |
| 대 학 | 1,523 | 2,791 | 1,087 | 38.9 |

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의 그것에 비해 단기대학은 69%, 대학은 39% 수준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教育與件이 국·공립보다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립대학 학생은 국·공립 학생에 비해 납부금은 두 배를 더 부담하지만, 총 교육비 수준에서는 오히려 국·공립 학생이 두 배 정도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를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専攻系列別로 살펴보면 〈表 13〉과 같다. 인문과학 계열의 경우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국립대학의 그것에 비해 73%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사회과학은 87%, 이학 33%, 공학 48%, 농학 52%,

〈表 13〉 日本 大學의 専攻系列別 學生 1人當 教育費 隔差(1980)

| 전 공 계 열 | 격 차 | 전 공 계 열 | 격 차 |
|---------|------|---------|-----|
| 인 문 과 학 | 73.1 | 보 | 진 |
| 사 회 과 학 | 87.2 | 가 | 장 |
| 이 학 | 32.9 | 교 | 육 |
| 공 학 | 48.5 | 예 | 술 |
| 농 학 | 51.6 | 기 | 타 |

주 : 격차는 국립대학에 대한 사립대학의 비율(%)임

자료 : 市川昭午, 教育サービスと行財政, p. 150.

교육 48%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사는 실험·실습 기자제 및 설비 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전공 계열에서는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국립에 비해 훨씬 뛰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열의 사립대학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질이 낮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건, 가정 및 체육 등의 계열에서는 오히려 사립대학의 교육비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일본 대학제정의 개요를 요약하였다. 이러한 대학제정과 관련하여 Shogo Ichikawa는 몇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單位教育費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다른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대학 교육비는 뛰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교육비 수준은 고등교육의 수준을 낮추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에 많은 격차가 난다는 점이다. 즉 국·공립과 사립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많은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指標에도 그대로 그 격차가 반영되고 있다고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 대 교수 비율, 학생당 건물 면적, 학생당 장서수 등에 있어서 사립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과 같은 학생당 경비가 적게 소요되는 학과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반면에 국·공립대학은 학생당 경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기초 과학, 공학, 의학, 교사교육 등은 위한 학과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의 차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에 관한 격차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학생이 부담하

는 교육비에 큰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사립학교 학생이 국립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학생이 국·공립에 비해 質의 수준이 낮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公平性(equity)의 차원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네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사립대학의 高納入금이 교육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한 예로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45~54세로 가정하고 이들의 소득을 5단계로 구분할 때, <表 14>에서와 같이 각 소득계층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학생은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학생수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던 국·사립의 학생 배치에서 나타나는 經濟的 偏倚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일본 대학생의 70% 이상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교육재정 제도는 低所得層 자녀의 교육 기회 균등화를 위해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醫大와 齒科大에서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립 의대와 치과대학의 학생들은 국립대학의 같은 학생들보다 3배 이상의 납입금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입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사립 의대·치대생의 대부분은 高所得層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더우기 이러한

<表 14> 日本 大學生의 家計所得水準別 分布(1976)
(단위: %)

| | I (저소득층) | II | III (중간소득층) | IV | V (고소득층) |
|------|-------------|------|----------------|------|-------------|
| 전체 | 11.8 | 14.6 | 20.6 | 22.2 | 30.8 |
| 국립대학 | 19.5 | 19.4 | 20.4 | 20.7 | 20.0 |
| 공립대학 | 18.2 | 18.1 | 20.5 | 22.0 | 21.2 |
| 사립대학 | 9.5 | 13.2 | 20.7 | 22.6 | 34.0 |

자료: Shogo Ichikawa, "Finance of Higher Education", p. 58.

사립대학의 일부는 학생 입학에 위하여 추가로 기부금을 징수하기도 하였으나, 1978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부금의 강요는 금지되었다. 이러한 금지조치 이후 사립대학은 남입금을 민감하게 증액시켰다. 한 예로 '80년대 초반에 高納入金을 징수하는 사립 의대와 치대의 경우 연간 남입금은 \$35,000과 \$40,000에 해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예가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은 아주 다양하다. 가장 학생수가 많고 가장 오래된 4년제 대학 이외에도 크게 3가지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이 있다. 우선 專門學校(écoles)를 들 수 있는데 이 학교는 행정가, 과학자, 기술자, 정치가 및 대학 교수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학교이며, 입학에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기술학교, 상인학교, 행정학교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 하나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大學技術研究所(instituts universitaires de technologie)를 들 수 있는데,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것으로 특수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2년제 과정이다. 그리고 리세의 上級班이 있는데 이는 단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대학 기술연구소와 같이 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2년제 과정이다. 그 외에 다양한 직업학교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1983년에 모두 107.4만 명에 달했다. 그 중에서 대학에 80%가 재학하고 있으며, 전문학교에 약 6%, 대학 기술연구소에 5%, 그리고 리세 상급반 및 기타 직업학교에 9% 정도가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고등교육 기관은 모두 국·공립 기관이며, 사립기관은 리세 상급반 및 기타 직업학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1983년 전체 고등교육 기관 재학생 중에서 사립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2.2%라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앞에서 프랑스의 대학 유형을 고찰하였으나, 이러한 대학들이 1974년 이전에는 모두 文部省 산하에 있었다. 즉 文部省내의 大學教育 研究局에서 대학교육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조직으로 대학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1974년 지스카르 데스당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서 독립된 중앙 정부 부처의 하나로 大學省(Secretariat of State for the Univ.)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부터 이 부처가 대학교육을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大學省 내에 3개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가의 대학교육연구위원회(CNESER), 대학총장협의회(CPU), 대학자문협의회(CCU)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 CNESER은 국가적인 수준의 대학위원회로서 9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2/3는 학생, 교수, 행정 직원의 대표로 선발되며, 나머지 1/3는 대학생에서 議員, 勞組代表 및 교육과 연구에 능력이 있는 적격자 중에서 위촉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학성 장관의 대학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하나 장관은 반드시 그 자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프랑스의 대학이 모두 大學省 산하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비의 거의 70% 이상을 대학성에서 부담·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타 중앙 부처에서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까지 고려하면 거의 90%에 달하는 대학교육비가 중앙정부 부담 교육비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성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投票를 통하여 심의·확정하고, 확정된 예산을 산하 각 대학에 배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비 제원 구성이 <表 15>에 제시되고 있다. 1980년도에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비 중 70.7%를 대학성이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15.8%를 타 부처인 産業省, 農林省, 保健省 등에서 부담하고 있다. 대학생은 제외한 중앙정부의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는 대부분이 부처와 관련된 研究費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외의 지방정부와 지방의 타 기관(authorities)에서 부담하는 교육비가 전체의 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企業體에서 전체 교육비의 5.9%를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 순수하게 학생

〈表 15〉 프랑스 教育費의 財源 構成(1980)

(단위 : %)

| 제 원 | 총 계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사회교육 | 기 타 |
|---------------|---------|--------|--------|--------|--------|-------|
| 총 계(백만 프랑) | 135,933 | 44,156 | 53,676 | 17,179 | 17,250 | 3,672 |
| 문 부 성 · 대 학 성 | 61.5 | 57.9 | 82.8 | 70.7 | 5.2 | 14.3 |
| 니 부 처 | 10.2 | 0.2 | 7.4 | 15.8 | 38.9 | 8.5 |
| 지 방 정 부 | 16.3 | 40.4 | 5.2 | 1.7 | 0.6 | 32.2 |
| 지 방 의 타 기 관 | 0.4 | — | 0.3 | 1.4 | 0.9 | 1.4 |
| 기 업 | 6.4 | — | 2.0 | 5.9 | 33.4 | 22.3 |
| 가 게 | 5.2 | 1.5 | 2.3 | 4.5 | 21.0 | 21.3 |

자료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sur les enseignements et la formation*, 1984, p. 25.

부담인 家計負擔은 4.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대학교육은 학생 부담에 의존하는 바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크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학생 부담은 고등교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사회교육은 受益者 부담에 의해서 형성되는 재원이 21%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재원은 대학성에서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성에서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문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表 16〉와 같이 요약된다. 전체 대학성 재원 중에서 71%가 인건비로 배분되고 있다. 인건비는 정규 교직원 봉급 67%와 보조 수업 경비 4%로 구성되고 있다. 프랑스 정규교수는 정교수(full lecturer), 조교수(assistant lecturer), 전임강사(junior lecturer)로 구분되

며 이들의 지급은 모두 정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된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에서 이들의 봉급이 지불되기 때문이다.

운영비는 전체의 18.6%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다시 일반적인 경비와 연구 경비로 구분된다. 그 중 일반 경비는 대학 운영에 관련된 경비로 행정 직원의 봉급뿐만 아니라 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해 배분되고 있다. 연구 경비는 실험실과 공작실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이러한 운영비 중 일반 경비는 1974년 GARACES(Group d'Analyse et de Recherche sur l'Activité et les Coûts des Enseignements Supérieurs)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 참조하여 새로이 개발된 배분 방법에 의해서 대학별로 배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일반 경비 배분 방법은 대학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취지는 可用한 재원내에서 지역간의 격차(특히 파리와 지방)를 축소시키고 수업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데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배분 방법은 모든 대학이 3개의 배분 요인에 의해 분류되는데, 3개의 배분 요인이란 교지 중 건축 면적과 비건축 면적, 표준 교수 대 학생 비율, 표준 행정직원 대 학생비율이다. 한 예로 이러한 배분 요인을 적용하여 i 대학에 일반 경비를 배분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일반 경비}(i) = (47 \times FA^i) + (0.40 \times NB^i) + 4355(NS^i \times OT^i) + (NT^i \times OAS^i)$$

FA : 건축면적 NS : 총 학생수

NB : 비건축면적 NT : 총 교수수

OT : 표준 교수 대 학생 비율

OAS : 표준 행정직원 대 학생 비율

〈表 16〉 프랑스의 大學省負擔 教育費 分類(1975)

| 구 분 | 교육비 (천 프랑) | 구성비 (%) |
|-----------|---------------|------------|
| 총 계 | 4,463,060 | 100.0 |
| 인 건 비 | 3,169,268 | 71.0 |
| 정 규 교 직 원 | 2,988,613 | 67.0 |
| 보 조 수 업 | 180,655 | 4.0 |
| 운 영 비 | 828,292 | 18.6 |
| 일 반 경 비 | 641,862 | 14.4 |
| 연 구 경 비 | 186,430 | 4.2 |
| 차 본 격 경 비 | 465,500 | 10.4 |
| 수 업 | 361,500 | 8.1 |
| 연 구 | 104,000 | 2.3 |

자료 : Pierre Goldberg, "The University System in France", p. 38.

〈表 17〉 프랑스 大學教育費의 性質別 分類(1983)

(단위 : %)

| 대 학 유 형 | 총 계(백만 프랑) | 경 상 비 | 인 건 비 | 자본적경비 |
|--------------------------|---------------|-------|-------|-------|
| 전 계 | 17,280(100.0) | 91.7 | 72.4 | 8.3 |
| Universités | 10,842(62.7) | 96.7 | 87.1 | 3.3 |
| Ens. techn. sup. | 2,420(14.0) | 93.5 | 80.0 | 6.5 |
| Grands établissements | 315(1.8) | 93.8 | 91.2 | 6.2 |
| Recherche | 1,033(6.0) | 16.0 | 13.7 | 84.0 |
| Action sociale étudiants | 2,247(13.0) | 98.7 | 13.9 | 1.3 |
| Formation personnels | 423(2.5) | 98.1 | 93.1 | 1.9 |

주: 1) () 안의 숫자는 총계를 기준으로 한 대학 유형별 교육비의 구성비임

2) 경상비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었음

자료: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p. 23.

이상과 같은 배분 공식을 援用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標準 학생 대 교직원 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 설정 과정에는 상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대학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표준비율을 설정하면, 같은 그룹에 속한 대학들은 적어도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나, 반면에 그룹간의 대학 사이에는 기존의 불균등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대학성 교육 재원은 물론 기타 모든 재원을 포함하여, 대학교육비를 성질별로 분류한 결과가 〈表 17〉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총 교육비의 90% 이상이 경상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자본적 경비는 8.3%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의 경우는 자본적 경비가 84%로 나타나고 있듯이 대학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적 경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

4) 이탈리아, 스웨덴, 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대학 교육재정의 고찰에 이어 이탈리아, 스웨덴, 대만의 대학재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관한다.

우선 이탈리아 대학의 경상 교육비 재원은 크게 4가지, 즉 학생 수업료, 투자 소득, 정부 및 공공·사설 단체로부터의 교부·지원금 그리고 대학의 서어비스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학생 부담인 수업료는 법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으며, 수업료에 포함되는 내용과 규모는 각 대학의 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전체 교육비 중에서 이러한 수업료 등의 학생 부담 재원

의 비중은 20%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투자수입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公債, 株式 및 기부 부동산으로부터의 이자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비중은 5% 수준에 달하고 있듯이 큰 재원은 못 되고 있다. 정부로부터의 交付金은 대학 재원 중에서 45%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사설 단체로부터의 지원금은 지방 행정기관, 은행, 상업 및 산업 관련 협회 그리고 공·사립 연구소 등에서 대학교육을 위해 출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 및 기관은 대학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솔타아를 형성하기도 한다. 공공 연구단체(예를 들면 국가 연구협의회(CNR), 국가핵물리연구소(INFN))는 대학에 직접적으로 교육·연구비를 지원하며, 간접적으로 대학내의 다양한 연구소를 지원하거나 장학금의 지원을 통해 대학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재원은 전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외의 재원으로는 서어비스 수입 즉 대학병원 수입, 대학연구소의 연구 수입으로 대단히 큰 수입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부터 형성되는 대학교육비는 인건비, 운영비 및 移轉費로 할당·배분된다. 인건비는 국가에 의해서 채용되는 교직원과 대학이 고용하는 임시 직원까지 모두 합하여 전체 경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가 운영비 및 자본 이전 경비로 배분되고 있다.

스웨덴의 대학교육은 대부분의 재원이 公共財

源으로 형성되고 있다. 1976년에 스웨덴 대학 교육비는 Kr 28.9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약 75%는 농업, 임업 및 수의학 연구소관 포함한 고등 교육 및 연구에 배분되었다. 여기에 배분된 재원의 90%는 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 10%는 연구위원회로부터 지원된다. 따라서 정부 부담을 제외한 사부담 재원은 전체 교육비의 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스웨덴 고등교육 기관은 거의가 국립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교육은 사립대학의 국립화를 통해서 성취되어 오고 있다.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교육 및 연구비는 문부성 예산 중에서 '고등교육 및 연구'라고 불리는 交付金を 통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교부금이 1977년 이전까지는 학술 목적을 위해서만 지원되었는데 1977년 이후에는 대학의 연구와 봉사 활동 전반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여 교부되고 있다. 그리고 문부성 산하가 아닌 농업, 임업, 수의학 연구소 및 연구협회 등도 문부성 이외의 타 부처로부터 交付金を 받고 있다. 이러한 교부금은 문부성 예산에서 1976년에 1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타 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교부금은 해당 부처 예산의 2.2%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둘 모두 포함하면 GNP의 0.7%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다.

1976년에 이상과 같은 交付金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전문학교에 85.1%가 배분되었고, 연구소 및 연구협회에 13.9%, 그리고 중앙 부서에 1%가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부금은 대학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충당되고 있다. 즉 1976년에 대학의 교부금 배분비율 보면, 학부교육의 인건비가 28.3%, 대학원교육의 인건비 18.8%, 그리고 교직원에게 필요한 운영비(제반 자료비, 교통비, 연구설비비 등)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의 나머지는 대학의 공통적인 기능을 위한 운영비, 즉 도서관 운영비, 대학 행정·관리비 등에 배분되었다.

끝으로 濼淵의 고등교육비는 총 교육비 중에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

육비는 국립의 경우는 정부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은 수업료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1978년에 국립대학 교육비의 재원은 정부 부담이 72.9%, 학생 수업료 수입이 13.3%, 사업 수입이 11.5%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정부 부담, 수업료 및 사업수입의 비율이 각각 3.7%, 52.7%, 39.2%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은 2년제 대학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재원은 1984년에 4년제 대학의 경우 경상비로 56.4%를 배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32.6%가 자본적 경비, 11.0%가 채무상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비의 지출 비율은 사립대학(48.4%)보다 국립대학(62.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립대학은 채무상환비가 전체 교육비의 26.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규모도 국·사립대학간에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1984년에 사립에 비해 국립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년제 대학은 2.3배, 4년제 대학은 2.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도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국립대학의 학생에 비해 더 많은 수업료를 부담하면서도 낮은 교육비 수준을 보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大學 教育財政에 주는 示唆

이상에서 지극히 객관적인 수준에서 몇 개의 선정된 국가관 중심으로 대학 교육제정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대학 교육제정은 대학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맥락과 교육행정 제도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주로 경비적인 측면 위주로 그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학 교육제정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제정에 줄 수 있는 示唆의 추출도 그만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정된 국가의 대학 교육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발전 사실 내지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제정에 줄 수 있는 몇 가지 示唆을 추출·제시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 투자 수준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결국 고등교육 투자 수준도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비 개관에서도 나타났듯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중에서 GNP 대비 총 교육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등교육비에 비교적 높은 투자 배분비율을 보이고 있더라도 고등교육 기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가장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원한다면 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고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 학생은 가장 質이 낮은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둘째, 정부가 대학교육비의 상당한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물론이고 사립대학이라 한지라도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사립대학 지원 중에서 약 20%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부담 교육비가 국·공립대학에서는 거의 50% 수준, 사립대학에서는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는 꼭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공립과 사립대학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립에 비해 사립의 학생이 수업료를 훨씬 높게 부담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隔差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85년 우리나라 국·사립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외국의 경우는 국립의 경우가 훨씬 많이 분석되었다.

네째, 전반적으로 대학교육비 중에서 寄附金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립에 비해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교육비 중 기

부금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도 큰 재원은 못 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학에게는 예외적으로 큰 재원이 될 수 있음도 시사받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70년대 대학의 기부금 과열정수가 公平性 내지는 機會均等의 차원에서 논란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립대학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여하튼 이러한 기부금은 거의 用途가 지정되어 있다.

다섯째, 학생 장학금의 지출이 많다. 학생에게 적정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수업료를 면제하여 주는 등의 직접적인 혜택 이외에 貸與獎學金, 근로 장학금 제도도 건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시사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기능별로 상세하게 분류하여 그에 따른 재정 배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비를 배분하기 위해서 배분 공식을 개발·적용하기도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배분 방안을 장구하려는 노력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주요국의 대학 교육제정 현황을 개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학제정에 줄 수 있는 몇 가지의 주요한 시사점을 추출·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우리나라 대학제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유익한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더 나아가 本簡에서와 같은 개관적인 수준을 벗어나 대학제정에 관한 보다 深化되고 分析的인 연구가 수행되어, 대학의 교육 기능을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제정 발전 방향의 모색에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日本文部省, 文部統計要覽, 1983.
 須田八郎, 教育財政と教育費, 日本 東京: 協同出版, 1982.
 市川昭午, 教育サービスと行財政, 日本 東京: ぎょうせい, 1984.
 中華民國教育部, 中華民國教育統計, 1985.
 廖季清 外, 公私立各級各類學校學生單位成本之調查研究, 教育部 教育計劃小組編印, 1980.
 Anderson, Richard E. "Private/Public Higher Edu-

- education and The Competition for High Ability Stude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0(Fall 1975): 500~11.
- Beckham, Joseph C., and Godbey, Galen C. "Conceptualizing Federal Tax Policies Toward Higher Education in the 1980s: Balancing Social Equity and Political Realities."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5(Spring 1980): 427~51.
- Bowen, Howard R. *The Cost of Higher Education: How Much Do College and Universities Spend Per Student and How Much Should They Spen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1.
- Garms, Walter L., Guthrie, James W., and Pierce, Lawrence C. *School Finance: The Economics and Policies of Public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8.
- Glenny, Lyman A. *Funding Higher Education: A Six-Nation Analysi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9.
- Gregory, Dennice E. "Financial Assistance by States to Independen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10(Summer 1984): 50~63.
- Hills, Frederick S., and Mahoney, Thomas A. "University Budgets and Organizational Decision Mak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3(Sept. 1978): 454~65.
- Ichikawa, Shogo. "Finance of Higher Education". In *The Changing Japanese University*, pp. 40~63, 1982.
- Johns, Roe L., Morphet, Edgar L., and Alexander, Kern. *The Economics and Financing of Education*.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3.
- McKeown, Mary P. "State Policies on Tuition and Fees for Public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8(Summer 1982): 1~19.
-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Reperes et References Statistiques: Sur les Enseignements et la Formation*, 1984.
- National Cente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2.
- The Carnegie Council on Polic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Next Steps for the 1980s in Student Financial Ai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9. *The Carnegie Council on Polic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A Summary Reports and Recommend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0.
- Wilson, Thomas F. "Redistributive Elements in the Management of College Endowment Funds."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10(Summer 1984): 36~49.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5.